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7월 1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7월 1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9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년7월20일) 상정
- 제9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년7월20일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)

□ **제안이유**

○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천시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증진센터에서 행하는 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.

□ **주요골자**

○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의료보험진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로 조정함(안 제4조)

○ 부천시건강증진센터에서 행하는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(재료비 포함) 기준의 5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조정함(안 제4조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감경사유는	○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7호
의결 년월일	2002. 7. 24 (제98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7. 12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천시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증진센터에서 행하는 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음으로 이를 조정하여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○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의료보험진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로 조정함 (안 제4조)

○ 부천시건강증진센터에서 행하는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(재료비 포함) 기준의 5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조정함(안 제4조 제2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 및 제3항중 "의료보험진료수가"를 "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"로 하고 동조제2항중 "의료보험진료수가(재료비 포함) 기준의 50퍼센트"를 "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(재료비 포함) 기준의 25퍼센트"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수수료의 징수) ①건강증진센터가 행하는 각종 검사수수료는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.	제4조(수수료의 징수)①----------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----------.
②건강증진센터에서 행하는 「별표 1」의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보험진료수가(재료비 포함) 기준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. 다만, 국가암조기발견사업의 경우에는 동 사업지침에 의한 수가를 적용한다.	②----------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(재료비 포함) 기준의 25퍼센트----------. ---------- ---.
③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서 산정되지 아니한 보험비급여대상 검사수수료는 「별표 2」와 같이 징수한다.	③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---------- ----------.